

Muan Web Contents

2021년 06월 19일 17시 40분



목차

목차	2
사용신고	3
대상	3
신고장소	3
구비서류	3
유의사항	3
과태료	3

사용신고	신고사항변경	사용폐지신고	신고필증/번호판/봉인재교부
용어해설			

대상

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(측자를 붙인 3륜,4륜 포함)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.

신고장소

- 주소지 관할 동은 차량등록민원실에 신고
- 읍·면은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고

구비서류

구분		구비서류
공통서류		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제작증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입이륜차 :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▪ 사용폐지 : 사용폐지증명서 </div>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(위임시:위임장,인감증명서, 위임받은자 신분증)
추가 서류	개인	추가서류 없음
	법인	법인등기부등본

유의사항

-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,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같은 서류입니다.
-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.

과태료

구분	기간	금액
미신고 운행	적발과 동시	50만원
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	차체, 원동기, 소음방지, 연료장치,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	20만원
	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	5만원

구분	기타 운전장치	기간	첨삭
----	---------	----	----

COPYRIGHT © MUAN-GUN. ALL RIGHTS RESERVED.

MUAN

Web Contents

 무안군